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아동권리보장원의 기관명칭을 ‘국가아동권리보장원’으로 변경하고 국가가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의2).
- 보호대상아동이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및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, 제15조의3, 제16조의2, 제22조의4, 제28조의2 등).
-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, 의료서비스 이용,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2 신설)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가정위탁 보호를 하는 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

경우 유사 입법례 등 참고하여 가정위탁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,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관계기관 의견

- 기획재정부는 안 제10조의2제5항에 대하여 이미 아동복지법의 근거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인건비,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출연금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견을 수용하였음.

<수정안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<u>아동권리보장원</u> (이하 “보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	제10조의2(<u>국가</u>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<u>국가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</u> <u>아동권리보장원</u> ----- -----.	
⑤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은 보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<u>비용</u> 을 지원할 수 있다.	⑤ <u>국가는</u> ----- ----- ----- <u>경비를 보조 또는</u> <u>출연할 수 있다.</u>	⑤ <u>국가는</u> ----- ----- ----- --.

(전문위원 박혜진)